

분리 세부추진지침('94.7.29)이 시달되고 한전, KBS에서 통합공과금 부과·징수에 관한 계약해지 통보가 접수됨에 따라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의 실효성이 없게 되므로서 기 징수한 부담금의 정산을 종료한 후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부천시 조례 제 호

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7일부터 적용한다.

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4. 11. 21.
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4. 11. 21.

라. 상정일자 : 1994. 12. 15. (제7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시민과장 이광양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우리시에서 처리한 민원사안 중 미해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반복,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'93. 3. 2 제정 공포된 조례이나 '94. 4. 8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기능과 같은 민원 조정위원회가 있어 동 조례는 그 실효성이 없기에 이를 폐지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동 조례 폐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 음

나. 반대토론

- 없 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

의 안	322
번 호	

제출년월일 : 1994. 11. 2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폐지이유

○ 부천시 민원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우리시에서 처리한 민원사안 중 미해결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 재심의를 함으로써 반복, 고질민원을 해결하고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'93. 3. 2 제정 공포된 조례이나 '94. 4. 8차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 기능과 같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 동 조례는 그 실효성이 없기에 이를 폐지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부천시 조례 제 호

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

부천시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